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18

2019년 2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제출일자및제출자 : 2019. 1. 15. 강동길 의원

2.회부일자 : 2019. 1. 23.

3.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2월 27일 상정· 수정(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강동길 의원)

1.제안이유

현행 조례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예방과 지원보다는 "고독사 예방"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의 계층과 형태는 다양한 반면 그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독사의예방과 관련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어 이에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련 사업 등의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 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사항에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 · 구조문 대비표(별첨)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

 본 개정안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및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음.

2 주요사항 검토

가. 시장의 책무(안 제3)

- 현행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 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적 고립은 초핵가족사회로 기존 가족중심의 돌봄기능고 사회안 전망 약화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복지·보건서비스 연 계 등 공공과 지역사회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임¹).

^{1) -} 일본: 연간 3만명 상당이 고독사로 사망. 독신 중년남성 4명 중 1명 - 영국: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 임명. 75세 이상 절반 홀로 거주

- 전체 378만 가구 중 1인·2인가구 205만 가구, 54% 차지(*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1인가구 현황: '10년 855가구(25%) → '15년 1,116가구(31%)
 - 2인가구 현황: '10년 782가구(22%) → '15년 930가구(25%)
-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
 - 서울시: '14년 299건 → '15년 338건 → '16년 308건 → '17년 366건
 - 전 국: '14년 1,384건 → '15년 1,669건 → '16년 1,833건 → '17년 2,010건
- 그러나 주민등록 공부상 1인가구 현황 파악은 가능하나, 「개인정보 보호법」강화로 가족과 단절 여부(취업, 채권채무 등과 관련한 은둔, 자발적 고립 등 단절확인 불가) 파악에 한계가 존재하며,
- 사회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의 유형도 다양화 양상을 보이며, 취업, 독신, 은둔, 개인의 선택 등 반드시 보호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취업, 독신 등 위험도 판단 및 지원대상 포함 여부 등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송파구, 관할 통장이 2019.1월 동절기 1인가구 전수조사 시 가구형태, 주소, 성명 등 개인정보 유출했다고 1인가구 대상자로부터 사생활 침해로 신고된 상태임

나. 사회적 고립가구의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사회적 고립가구의 거주 특성은 고시원·원룸·옥탑방·쪽방·다세대 주택 등 주거취약지역이 많고, 이혼과 실업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관계 단절이 나타남.
 - ※ 지역별로 관악구(19건), 노원구(18건), 구로구(17건), 강서구(13건) 순
- 고독사 확실사례 162건 중 남성이 137건으로 많고(85%). 중장년층 이 다수(62%)이며, 사망자 39%는 알코올중독, 우울증, 간경화 등으 로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19년 '고독사 없는 서울'구현 기본계획이 현재 전문가·현장 업무 담당, 주관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TF팀 구성, 의견수렴 중이며, 3차회의를 거쳐 계획수립 예정임.
-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의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조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사회적 고립가구'의 당사자와의 상담 및 지속적 관찰을 해야하며, 은둔 및 상담기피 등으로 그 수요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1인가구가 반드시 위험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예방 및 지원게획의 수립에 있어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 고독사 연령별 비율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연령 불상
비율	3.1%	9.9%	21%	35.8 %	19.8 %	7.4%	1.2%	0.6%	1.2 %

다.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규정 신설(안 제7조)

- 개정안 제7조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은 현재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서 기 실행하고 있음
-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에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청년층, 중년층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의 규정을 하는 것은 사회적 고립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사항 조항 신설(안 제8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쳬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고 유기적 협

력체게 구축을 시장의 책무 규정으로 두는 것은 사업의 실질적 수 행이라는 책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종합 의견

- 사회적 고립가구는 사회적 관계 단절상태와 빈곤, 실직, 질병, 정신적 문제 등이 동시에 발생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 황 발생하나 공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노인·장애인·여성 등 대상별 복지체계로는 관계단절문제 해결이 어렵고,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비함.
- 주민등록 공부상 1인가구 현황 파악은 가능하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가족과 단절 여부(취업, 채권채무 등과 관련한 은 둔, 자발적 고립 등 단절확인 불가) 파악에 한계가 존재하며.
- 사회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의 유형도 다양화 양상을 보이며, 취업, 독신, 은둔, 개인의 선택 등 반드시 보호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취업, 독신 등 위험도 판단 및 지원대상 포함 여부 등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 제2조(정의)에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1인 가구는 취업, 독신 및 개인기호에 따른 선택 등 여러가지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어 반드시 보호를 전 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ㅇ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기 시행하고 있는 예방사업 및 협

력체계 구축 등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1인가구가 반드시 위험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있어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정망 확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참 고 1 '18년 서울시 1인가구 지원실적 및 1인가구 통계

□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실적

□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등 주도적인 주민조직 구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고독사 예방 활동 추진 : 총 351명

(단위: 명, %)

전체	통반장	지역 주민	동지사협 위원	직능 단체	기타 활동가	지역 복지기관	고시원 관계자	나눔 이웃	직원	종교	주민 자치회
351 (100.0)	184 (52.4)	47 (13.4)	32 (9.1)	23 (6.6)	22 (6.3)	15 (4.3)	14 (4.0)	5 (1.4)	(0.6)	(0.9)	4 (1.1)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확인안됨
351	3	12	36	135	125	28	1	11
(100.)	(0.9)	(3.4)	(10.3)	(38.5)	(35.6)	(8.0)	(0.3)	(3.1)

□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실적 : 총 768명, 5,324건 지원

			지 원	실 적	(연인원, 명)		
발굴건수	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loT	도시락 현물지원	기타 (자조모임등)
768	5,324	429	168	227	89	3,434	977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2000~2015년) 주기, 서울시 가구현황

(가구, %)

연 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00년	3,085,936	502,245	524,663	670,538	989,621	398,869
2000년	(100.0)	(16.3)	(17.0)	(21.7)	(32.1)	(12.9)
2005년	3,309,890	675,739	670,455	732,043	917,243	314,410
2005년	(100.0)	(20.4)	(20.3)	(22.1)	(27.7)	(9.5)
2010년	3,504,297	854,606	781,527	788,115	807,836	272,213
2010년	(100.0)	(24.4)	(22.3)	(22.5)	(23.1)	(7.8)
2015년	3,784,490	1,115,744	930,467	817,440	701,945	218,894
2013년	(100.0)	(29.5)	(24.6)	(21.6)	(18.5)	(5.8)

(2018. 12월말 기준)

				401	шо	ul 7			지 원	실 적 (연인원)	
연 번	자치구	동 명	세대수	1인 가구	비율 (%)	발굴 건수	소계	생계비		주거비		<i>,</i> 도시락 현물지원	기타
	계		317,391	153,465		768	5,324	429	168	227	89	3,434	977
1	종로구	창신2동	4,270	1,970	46.1	17	54	15	6	5		11	17
2		종로5.6가동	3,204	2,094	65.4	18	268	8	2	8		250	
3	용산구	용문동	5,288	1,826	34.5	33	136	23	7	1	3	22	80
4	성동구	성수1가1동	7,617	3,002	39.4	24	75	43	10	2		20	
5	동대문구	이문1동	14,445	8,005	55.4	60	220	19	3	4	5	187	2
6	중랑구	면목본동	17,439	7,982	45.8	14	69	13	5	2		44	5
7	성북구	장위1동	8,910	3,145	35.3	15	194	21	3	3		165	2
8	강북구	번3동	7,624	2,056	27.0	65	198	14	9	4		126	45
9	3 	수유3동	12,161	6,106	50.2	34	98	16	5	13		64	
10		하계1동	12,479	4,713	37.8	36	71		10	7		54	
11	노원구	공릉1동	17,910	7,632	42.6	38	654		22	46		580	6
12		월계2동	11,270	3,609	32.0	47	121	1	14	6		100	
12		(월계3동)	(13,033)	(3,474)	(26.7)	47	121		14	U		100	
13	서대문구	북아현동	7,537	2,767	36.7	29	147	17	2	6		60	62
14	- 1- 11-	신촌동	11,630	8,405	72.3	31	832	49	4	6	66	673	34
15	마포구	성산2동	17,371	6,513	37.5	92	38	17	11	2			8
16	양천구	신월1동	10,165	4,148	40.8	15	116	33	4	19		60	
17	강서구	가양2동	8,112	3,700	45.6	35	117					65	52
18	6 AI T	가양3동	7,724	2,817	36.5	28	400					360	40
19	구로구	구로4동	10,734	4,824	44.9	13	66	19	1	4		42	
20	그워그	가산동	12,441	8,510	68.4	16	597	19	7	23		160	388
21	금천구	독산1동	17,334	8,052	46.5	8	119	16	9	23		44	27
22	영등포구	신길1동	9,578	5,402	56.4	33	84	11	3	7		25	38
23	동작구	노량진1동	14,481	6,010	41.5	28	150	18	18	7	15	92	
24	ılo⊦ ¬	대학동	15,361	11,135	72.5	10	105	21	3	15		60	6
25	관악구	행운동	16,583	9,818	59.2	20	180	20	3	10		120	27
26	강남구	역삼1동	22,690	15,750	69.4	9	215	16	7	4		50	138

□ 보건복지부 무연고사망자 연도별 통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시	299건	338건	308건	366건
 전 국	1,384건	1,669건	1,833건	2,010건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V. 토론요지: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찬성 8명, 반대 0명】

Ⅶ.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없음」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318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7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 제3조제2항 "책무"규정에서 사회적 고립가구의 현황파악은 주민등록 세대별 공부상으로 1인가구 현황파악이 가능하나 개인 정보보호법 강화 등으로 가족 등과 단절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는 등 1인 가구가 반드시 위험한지에 대한 검토 및 지원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개정안을 현행 조항으로 변경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시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현황파악과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수립한다는 개정안을 현행안으로 개정함(안 제3조제2항)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현황 파악"을 "고독사 현황파악"으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책무) ① 서울특	제3조(책무) ① 서울특	제3조(책무) ① 개정안과
별시장(이하 "시장"	별시장(이하 "시장"	같음
이라 한다)은 <u>고독사</u>	이라 한다)은 <u>고독사</u>	
<u>위험</u> 에 노출되거나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	노출되거나 노출될	
다고 판단되는 자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험으로부터 적극	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요한 정책을 수립하	필요한 정책을 수립	
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u>고독사 현</u>	② 시장은 <u>고독사 및</u>	② 고독사 현
황 파악, 고독사 발생	사회적 고립가구의	황 파악과 고독사 발
<u>위기에 대한</u> 사전 예	현황 파악과 고독사	<u>생위기에 대한</u>
방 및 사후 대응의 각	<u>발생 위기에 대한</u> 사전	
단계에 따른 정책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시행・수립하여야 한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다.	시행・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고독사 <u>예방을</u>	① 시장은 고독사 <u>예방</u>	① 개정안과 같음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항을 포함한 <u>예방</u>	<u>안전망 확충을</u> 위하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다.	포함한 예방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u>예방</u> 을 위한	1. 고독사 <u>예방 및 사회적</u>	1. 개정안과 같음
기본방향 및 목표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4. <u>고독사 예방</u> 을 위한	4. <u>고독사 및 사회적</u>	4. 개정안과 같음
사회 환경 조성에	<u>고립의 예방</u> 을 위한	
관한 사항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청년층·중년층·	5. 청년층·중년층·	5. 개정안과 같음
노인 등 생애주기별	노인 등 생애주기별	
<u>고독사 예방대책</u> 및	고독사 및 사회적	
지원방안	<u>고립 예방대책</u> 및	
	지원방안	
6. <u>고독사 예방</u> 교육	6. <u>고독사 및 사회적</u>	6. 개정안과 같음
및 연구지원에 관한	<u>고립 예방</u> 교육 및	
사항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고독사 <u>예</u>	8. 그 밖에 고독사 <u>예</u>	8. 개정안과 같음
<u>방</u> 을 위하여 시장이	방 및 사회적 고립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가구 안전망 확충</u> 을	
사항	위하여 시장이 필요	
Į.	I	

	하다고 인정하는 사	
	ठॅ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예방사업) ① 시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장은 제6조의 지원대	① 시장은 제6조의	① 개정안과 같음
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	1. ~ 9. (현행과 같
	후)	후)
<u><신 설></u>	10. 청년층·중년층·노인	<u>10.</u> 개정안과 같음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u>10</u> . 그 밖에 고독사	<u> 11</u> 예	<u>11</u> . 개정안과 같음
예방을 위해 시장이	방 및 사회적 고립	
필요하다고 인정하	가구 안전망 확충-	
는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u>예방</u>	시장은 고독사 <u>예방</u>	개정안과 같음
<u>사업</u> 을 체계적으로	및 사회적 고립가구	
추진하기 위하여 자	안전망 확충에 관한	
치구, 관련 기관 및	<u>사업</u> 을 체계적으로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고독사 위험"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예방계획의 수립)"을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방"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으로, "예방계획"을 "예방 및 지원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예방"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안전망 확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독사 예방"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고독사 예방 대책"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고독사 예방"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예방"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하며, 같은 한 제8호 중 "예방"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으로한다.

제7조 제목 "(예방사업)"을 "(예방 및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제7조제1항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예방"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으로 한다.

제8조 중 "예방사업"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 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 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수립하여야 하다.
-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 년 수립하여야 한다.
 -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2. · 3. (생 략)
 -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 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 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고독사 현황 파악과 고독사 발생위기에 대한----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2. · 3. (현행과 같음)
 -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

경 조성에 관한 사항

- 5. 청년층 · 중년층 · 노인 등 생 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워방아
-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 워에 관한 사항
- 7. (생략)
-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 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 (생략)

- 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 9. (생 략) <신 설>
 -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 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 ②·③ (생 략)

- <u>방</u>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5. 청년층 · 중년층 · 노인 등 생 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 6.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 7. (현행과 같음)
-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 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예방사업) ① 시장은 제6조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 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 9. (현행과 같음)
 - 10.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 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 11. ----- 예방 및 사회 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 ② · ③ (현행과 같음)

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 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 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 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